

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

통신산업부고시 제 1995-73호
건설교통부고시 제 1995-274호
<1995년 8월 3일>

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(이하 “레미콘”이라 한다)를 적기에 생산·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(이하 “시공자”라 한다) 및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배치플랜트”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·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.
2. “현장배치플랜트”라 함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.

3. “레미콘전문제조업자”라 함은 고정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를 얻어 레미콘의

생산·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.

4. “생산능력”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혼합장치가 단위시간당 생산하는 용량을 말한다.

5. “출하능력”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가 실제 출하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용량 또는 생산능력의 80%에 해당하는 용량중 작은 쪽을 말한다. 다만, 실제 출하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80%로 본다.

6. “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”라 함은 콘크리트를 바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이내에 트럭믹서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를 말한다.

7. “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”이라 함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. 다만,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.

8. “레미콘 수용성수기”라 함은 당해 건설공

9. “대규모 구조물”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.

10. “공공공사”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대상) ①이 고시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시공자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.

②당해 건설공사와 발주자 및 그 공사를 인·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③현장배치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시·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4조 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) ①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등을 하여야 한다.

②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 (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) ①건설

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·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·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.

1.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이내에 트럭미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 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·도서지역·교통체증지역 등

2. 압축강도가 400kg/cm^2 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cm 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

3.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 콘크리트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·매스콘크리트·경량골재골크리트·해양콘크리트·수중콘크리트·프리팩트 콘크리트·숏크리트·철골·철근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

4.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이외에 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 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

②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·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공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례

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 1을 주변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1.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

2.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

③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 (공동협력) ①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②관할 시·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 단체로 부터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

받은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당해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 (품질관리) ①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유지한다.

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